

예천군 고시 제 2017- 122호

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
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동법시행령
제4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. 12. 29.

예 천 군



1. 열람내용 :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
2. 열람장소 : 예천군청 재무과
3. 시 행 : 2018. 1. 1부터 12. 31까지